

09.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오직 하느님만이 충만함이다. 오직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존재와 조화롭고 아름다운 전체적 모습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킬리만자로의 산과 시베리아 초원, 아마존 강과 인도양,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초와 광대한 우주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살아 있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삶 자체—움직임, 성장, 각자에게 맞는 완성을 향한 자연적인 기울어짐—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가장 단순한 생명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 세계의 서열에서 그냥 하나가 아니다. “볼 수 있는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다”(“기쁨과 희망” 12,3). 인간은 “지상에서 하느님께서 그 자체를 위하여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이다”(“기쁨과 희망” 24,3)”(“가톨릭 교회 교리서” 356 항). 우리 행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 곧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이다. 인간의 구조는 동일한 하나의 주체를 이루는 물질과 정신의 결합을 내포한다. 이처럼 인간은 “두 대립적 요소의 병렬”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 안에 있는 두 공동 원리의 결합이다. 그 결과 “인간의 몸은 “하느님 모상”의 존엄성에 참여한다. 인간의 몸은 영적 영혼으로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이며, 온 인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성전이 될 운명을 지닌다(1 코린 6,19-20; 15,44-45 참조)”(“가톨릭 교회 교리서” 364 항).

이러한 존재론적 실재—우리 본성의 실재—는 인간이 알고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다른 이들도 고유한 “나”임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고, 하느님을 삶의 목적으로 선택하며, 그분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기쁨과 희망” 12,1; 24,3; 39,1 참조),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온 창조물을 봉헌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8 항). 요약하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몸과 정신으로 창조하셨으니, 모든

물질적·영적 실재를 사랑으로 하느님께 지향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인간 존엄성,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차별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체의 존엄성을 지닌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 아니라 누군가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 항). 그러므로 우주, 다른 사람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독특하며, 다른 모든 볼 수 있는 피조물과 다르다. 이 관계는 유일하고 자유로이 사랑할 수 있는 주체의 고유함을 지닌다. 이처럼 인간이 창조된 목적—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인 이유”(“가톨릭 교회 교리서” 356 항)를 구성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차례로, 인간 인격의 이러한 내재적 존엄성은 모든 이의 근본적 평등—존재와 행동의 자유에서—이 바탕을 두는 토대이다. “인간 인격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권리의 존중을 내포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0 항). 실제로 인격체의 자질, 누군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다. 기원,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갖는 수단도 공통적이다. 반면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 자질, 문화, 나이, 건강 등은 인격체의 자질이나 그것이 내포하는 존엄성을 바꿀 수 없다. 인간 배아, 아이, 청년 또는 노인이든, 교육, 재산, 특정한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건강을 누리든 병들어 있든, 이 시대 저 시대에 이 곳 저 곳에 살든... 이러한 상황들 중 어느 것도 인격체적 존재의 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체이다. 더 나아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주체이다. 인간 존재의 모든 구조가 사랑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느님 및 다른 인격적 존재들과 결속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향한 기울어짐을 전제한다. 이 실재는 인격체의 평등을 위한 또 다른 토대를 이루며, 이는 각 개인에 대한 존중과 집단에 대한 존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반면에 차별은 "배제함으로써 선택"하거나, 인종적·종교적·정치적·성별·나이·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단순히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부당한 대우이다.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다른 실재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큼이나 부당하다. 부정적 의미의 차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인종주의는 특정 민족 집단의 과대평가(우상숭배의 한 형태)로서, 특정 인종에 우월한 자질과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인종들을 본질적으로 열등하고 덜 존엄하며 특정 권리에서 배제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부정적 형태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모든 사람과 집단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예: 반유대주의, 집시에 대한 멸시... 결국 어떤 인종이든 열등하게 보는 것).

외국인 혐오는 “외국인에 대한 증오, 혐오감 또는 적대감”이다. 이 역시 부정적이고 배제적인 선택(존엄성에 마땅한 평가와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 권리의 인정에서 배제)이다. 이는 이민자나 난민과 같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할 때 특히 심각하다.

생명에 대한 존중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 역시 부당한 차별이다. 예컨대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어떤 삶이 가치 없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인격체 자체 외에 다른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다(신체적·정신적 장애, 나이, 건강 문제 등에서). 또한 어떤 우연적인 차이를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줄이는 차별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조건, 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문화적 차별은 하느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이므로(“기쁨과 희망” 29,2)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성의 인간학적 차원

“남자와 여자는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원하신다. 한편으로는 인간 인격체로서 완전히 평등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되었다. "남자임", "여자임"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실재이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존엄성으로 "하느님의 모상"이다. 그들은 "남자임"과 "여자임" 안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선하심을 반영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369 항).

인격체는 "성적 차원"을 지니며, 이는 삶의 모든 면—생물학적·심리적·영적 면—에서 인격체 전체를 포괄하고 형성한다. 근본적 평등은 정확히 "인간의 인격체" 자체에 있으며, 차이는 인간 인격체임의 "방식"에 있다. 여성과 남성은 특별한 친교를 향하는 동일하고 유일한 인격적 실재의 "서로 다른 표현"이다.

이성애의 긍정은 여성 인격체와 남성 인격체 사이의 자연적 차이의 수용에 기초한다. 이성애는 인격체로서 평등을 선포하고 인격체의 방식에서 차이를 인정한다. 나아가 이 평등과 차이의 기초가 각자가 기여하고 받는 특별한 상호주관적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거기서 보완적인 풍요로움과 생성의 공동 원리가 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인간 인격체들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적 기울어짐은 특정한 사랑—부부의 사랑—으로 이어지며, 이는 차이 안에서 정확히 서로를 주고받는 것을 전제한다.

혼인은 합법화된 성적 동거의 형태가 아니라 "부부 결합"이다. 즉, 남자와 여자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잠재적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서로에 대한 "상호 귀속"의 유대이다. 이 배타적이고 영속적인 결합은 또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들의 존엄성과 그들의 돌봄·교육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분명히 여자나 남자를 그 조건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여성(또는 남성)의 긍정적 차별은 특정 상황을 고려하거나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부당한 불균형을 시정하려 할 때 합당하고 정당하다. 이는 이전의 부당한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젠더 차이에 관한 연구와 그 채우는 양과 질적으로 발전했으며 흥미로운 고찰들을 제공하고 있다. 젠더 이론의 일부 파생 이론들은 성적 구별에 관하여 본성의 실재와 행동 사이의 급진적 단절을 지향한다. 이 이론들은 성(性)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창조물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그 관점에서는 여자와 남자 사이의 평등을 논할 필요가 없다. 차이[성]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생물학적 특성들이 존재할 뿐이지만 이것들은 인간 몸의 자연적 중립성의 일부이며 각자의 자유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과 인위적 강요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의 첫 번째 소외는 여자와 남자의 "실제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여기서 이성애 혼인과 일부일처제 가족이 필연적 결과로 강요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 소외를 없앴으로써 여자-남자 결합과 출산의 연결, 모성 자체(여성을 억압한다는), 그리고 기원에서 비롯되는 관계—혈연—도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이 개념에서 몸의 특성들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자유로이 처분 가능하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욕구에 따라 내가 결정한 존재다. 그 외에 다른 변수는 없다." 남성적 특성의 몸을 지니고 여성이라 하거나,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느낄 수 있고, 성전환을 원할 수도 있는 등, 자기 의지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동등하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물질과 정신의 일치, 성적 신체성의 의미, 여자와 남자의 상호 보완성, 자유, 헌신, 부부의 사랑, 혼인 결합과 가정에 관한 실재 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대조된다.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동성애(남성 또는 여성의)는 동성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주요한 성적 끌림이다. 이는 인격체의 심리적 특성과 삶의 이력을 비롯한 많은 변수들의 결과일 수 있다.

“교회의 전통은 언제나 "동성애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것이다"(신앙교리성, “인격체” 8 항)라고 선언해 왔다. 동성애 행위는 생명의 선물에 성행위를 담아 버린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 항).

“적지 않은 수의 남녀들이 깊이 뿌리 박힌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다.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이 성향은 그들 대부분에게 하나의 진정한 시련이 된다. 이들은 존중과 연민과 세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의 표시는 피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하도록 부름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상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결합할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 항).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며,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그 존엄성에서 존중받고 배려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모든 부당한 차별의 표시"("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 항; "2015 년 최종 보고서" 76 항 참조)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을 피해야 한다"("사랑의 기쁨" 250 항)고 재확인한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가정들에게도, "동성애 성향을 드러내는 이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 어린 동반을 보장하려는"("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 항 참조)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교회는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정결로 부름 받고 있다. 내적 자유를 교육하는 자기 절제의 덕과 때로는 사심 없는 우정, 기도, 성사 은총의 도움으로 그들은 점차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완덕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9 항)고 상기시킨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름 받은 정결의 소명이 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러한 결합을 혼인과 동등 시하려는 시도에 관하여, 교회의 가르침은 "동성 결합과 혼인 및 가정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 사이에는, 아무리 멀리 보아도, 동화시키거나 유비를 세울 근거가 없다"("사랑의 기쁨" 251 항)고 상기시킨다. 이는 교회의 금지나 처벌 조치가 아니다. 이는 그러한 결합이 부부 결합—남녀의 차별적 관계를 전제하는—과 동등화 될 수 없으며, 동거하는 이들이 생성의 공동 원리가 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356~373 항, 1930 항, 2113 항, 2357~2359 항.